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7. 7.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6월 3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7월 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 5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7. 5) 상정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7.12)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공우홍)

- 가. 제안이유
 - '9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처리
 - 세입(세의수입, 보조금)증가
- 나.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증△감)	증감율%	
총 계	144,733,509	130,738,849	13,994,660	10,77	
일 반 회 계	113,168,698	103,908,681	9,265,017	8,98	
특 별 회 계	소 계	31,564,811	26,835,168	4,729,643	17,62
	의료보호기금	1,457,849	1,459,244	△1,395	△ 0.1
	주민소득지원	724,276	545,895	178,381	32,68
	주 차 장	29,382,686	24,830,029	4,552,657	18,36

- 주 요 재 원
 - 일반회계 : 9,265,017천원(세의수입,보조금,조정교부금)
 - 특별회계 : 4,729,643천원(의료보호,주민소득지원,주차장이월금)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전문위원 : 유제한, 허영훈)

- 가. 행정재무위원회
 - 기획실 소관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방법원에서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조정분과 기획실 설치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도 여권과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관련 예산 등 여분의 국고보조금을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타 용도의 예산으로 경정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도 여권과 국비집행잔액 반환금과 '96사회복지수요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하게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됨.
 -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13억 7,54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여건변동과 사업변경에 따라 경정되거나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 금융기관에 대한 지독감독 뿐만 아니라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소관 예산안은 기본적인 관서운영비와 행정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됨.

나. 시민보사위원회

- 시민생활국소관 세출예산중 보상금에서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의 부적정 편성을 내무부 지적 사항으로 미화원 격려를 위한 경정편성이며 일부편성된 예산중 당초 기본예산 편성시 예산요청이 되어졌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사전조사미흡 등으로 부족하게 요청하므로 당초 예산액에 상회하는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은 성인병 건강 진단 수수료 세입 및 일반관리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은 건축지도에 시설비는 사리가 시장과 대신시장 주변의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정에 의거한 주변정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2개소를 용역으로 맡기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을 하여 예산을 요청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국소관예산중 재해대책 적립금은 법에 의해 전년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금인 것으로 생각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조정규모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추경요구액	조 정 액		수정예산액	비 고
			증	감		
총 계	144,733,509	13,994,660	418,000	418,000	144,733,509	
일반회계	113,168,698	9,265,017	418,000	418,000	113,168,698	
특별회계	31,564,811	4,729,643	-	-	31,564,811	

특별회계: 조정내역없음

나. 특별수정내역

(단위 : 천원)

세항	목	조 정 액		조 정 내 역	비고
		증	감		
계		418,000	418,000		
예산 운영	인건비		3,000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반운영 3,000천원 삭감	
일선행정조직	시설비등		387,000	도립2동청사신축부지매입비387,000천원 삭감	
교통기획행정	시설비등		28,000	영등포구청블럭일방통행사업280,000천원 삭감	
하천 관리	적립금	132,000		재해대책기금 132,000천원 증액	
일선행정조직	시설비	50,000		신길4동 청사보수	
도로 건설	시설비	236,000		도로포장도로보수및소파공사에 236,000천원증액	

※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

5. 審査結果: 수정안 의결

'9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년월일 : 1997. 6. 3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
- 세입(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가

2.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	금회추경 (증△감)	증감율(%)	
총계	144,733,509	130,738,849	13,994,660	10,7	
일반회계	113,168,698	103,908,681	9,265,017	8,9	
특별회계	소계	31,564,811	26,835,168	4,729,643	17,6
	의료보호기금	1,457,849	1,459,244	△1,395	△ 0.1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 금	724,276	545,895	178,381	32,7
	주차장	29,382,686	24,830,029	4,552,657	18,3

○ 주요재원

- 일반회계 _____ 9,265,017 천원
 - 세외수입 ----- 8,340,356 천원
 - 보조금 ----- 535,661 천원
 - 조정교부금 ----- 389,000 천원
- 특별회계 _____ 4,729,643 천원
 - 의료보호기금 ----- △ 1,395 천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78,381 천원
 - 주차장 이월금 ----- 4,552,657 천원